

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(문영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9일
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자, 김동욱, 김제리,
김종욱, 김진철, 김창원,
박기열, 우창윤, 우형찬,
장홍순, 최조웅, 황준환
의원 (12명)

1. 폐지이유

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·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발전’을 목적으로 ‘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전·현임 교육위원’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